

1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부당사례1

○○노인복지센터 A 요양보호사는 B 수급자에게 실제로 240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급여제공시간 중 외출하고 복귀해 종료 태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270분 초과 제공한 것처럼 총 16회에 걸쳐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부당사례2

○○재가노인복지센터 C 요양보호사는 D 수급자에게 일 150분 ~ 210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30분 가량 일찍 수급자 자택을 벗어나, 수급자 자택에서 탈거한 태그(RFID)에 종료 전송을 하고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보다 시간을 늘려 일 180분 ~ 2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총 55회에 걸쳐 급여제공기록지(RFID 포함)를 허위 작성하고,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가정방문급여는 등록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RFID 전송 포함)에 사실대로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청구해야 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29.)~제2024-113호(2024.6.27.))
- 제6조(장기요양급여의 절차 등), 제15조(가정방문급여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제공기준),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부당사례3

○○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2인은 7명의 수급자에게 2024.7.23.~2024.12.31.기간 동안 실제 방문목욕 서비스를 '40분 이상 60분 미만'으로 제공하였으나 '60분 이상'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총 77회에 걸쳐 급여제공기록지(RFID 포함)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비용의 80%를 산정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제2024-113호(2024.6.27.))
-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 본 자료에 표기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은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의미함.

2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부당사례

가족인 요양보호사(자녀)는 부친인 수급자에게 2023.9.~2024.10. 기간 동안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하여 총 260회, 1일당 '60분 이상(가족, 방문당)' 수가로 청구하여야 하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제2024-113호(2024.6.27.))
-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3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방문요양)

부당사례1

○○재가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2인은 2명의 수급자에게 각각 2024.4.~12.(총 68회), 2024.5.~6., 8.~9.(총 13회) 기간 동안 방문간격을 2시간 미만으로 급여 제공하였으나 2시간 이상 방문간격을 두고 방문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부당사례2

○○재가복지센터의 E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동거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2024.10.(총3회) 기간 동안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RFID)를 작성(전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일 3회 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제2024-113호(2024.6.27.))
- 제16조 (재가급여 제공시간),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